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가. 의안번호: 1849
- 나. 발 의 자: 주복중 의원(찬성의원 8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10월 2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안 제3조~안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안 제6조)
- 라. 사무위탁(안 제7조)
- 마.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라. 입법예고(2022.11.11.~2022.11.1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중
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
출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본 조례의 목적 및 ‘중고령 중증장애인’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함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안 제5조)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목표, 사업 및 지원, 자원조달 등에 대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안 제6조~안 제7조)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돌봄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복지원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안 제9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해당 사업 추진 시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 의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장애등급 1, 2, 3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장애는 크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지적/자폐성/정신으로 분류됩니다.
- 성동구에 등록된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현황으로는 10월 현재 기준 성동구에 전체 장애인은 11,119명이며 중증장애인은 3,804명이며 이 중 50세 이상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546명(남 1,490명, 여 1,056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08년에는 34.5%에서 2018년에는 53.7%로 절반을 넘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보다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조기 노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40세 이상 장애인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보

유하고 있는 비율도 높아 일반인에 비해 노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일반인의 고령화 대책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에는 조기 노화를 반영하여 중년부터 고령화를 대비한 단계적 지원대책을 세워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를 겪는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장애노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노인으로 진입하게 된 노인은 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마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되면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장애인들은 노화가 되면서 장애와 노화로 인한 중복 문제를 겪게 되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서비스 지원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지만 장애 영역의 서비스는 청·장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대부분 장애인 돌봄시설은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어 5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바, 본 조례안을 통하여 중고령 중증 장애인들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령(50세 이상) 설정 기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 지자체는 아래와 같음

| 구 분 | 경기 | 경남 | 제주 | 부산 | 서울시 동작구 |
|----------------|--------------------------------|--------------------------------|--------------------------------|--|--------------------------------|
| 조 례 명 (제정일) |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20-05-19) |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20-11-05) |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21-06-25) |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022-07-06) |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21-07-15) |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장애인 | 50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장애인 |

○ 또한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노화로 활동의 제약이 더욱 두드러져 사회 참여율이 감소하며 정서적 소외감을 겪는 비율이 높고 고령화될수록 가족돌봄 등의 한계로 갈등을 겪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되어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세밀한 복지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동작구가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해당 조례를 시행하게 되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20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퇴직 및 조기 노화로 인해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